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이 필요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의2)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의2~안 제11조)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중복되는 조문 정비(안 제14조, 안 제16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5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7. 22.(수) ~ 2026. 8. 11.(화) (20일간),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운용하는데”를 “관리·운용하는 데”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초구에”를 “서초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을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기금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초구 의회 1인”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 중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관계부서”를 “관계 부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u>관리·</u> <u>운용하는데</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관리·</u> <u>운용하는 데</u> -----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 ----- ----- ----- <u>2031년 12월 31일</u> -----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u>경과된</u>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u>지</u> <u>난</u> ----- ----- -----.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u>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u>	1. ----- ----- ----- ----- <u>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u>

2.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u>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관리한다.</u> 1. <u>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u> 2. <u>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6조(기금의 회계처리) <u>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u>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u>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u>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u><삭제></u> <u><삭제></u> <u><삭제></u> ① <u>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u> ② <u>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u> <u><삭제></u>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 <u>서초구</u> ----- ----- ----- ---. ② ----- -----
---	--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1. 서초구 의회 1인,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로행정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2. (생략)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 민간 전문가
가 전체 위원수의 -----
-----.

③ -----
----- 기금 담당 국장-----
--.

④ ----- 사람 -----

-----.

<단서 삭제>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현행과 같음)
3. ----- 관련 분야 -----

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

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신설>

<신설>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심의사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전 제출 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교통복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관계 서류-----

-----.

④ -----

----- 관계 부서-----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4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재무제표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

-----.

----- 대

해서-----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
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
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3조의 회
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
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
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
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
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16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
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
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
다.

<삭 제>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년월일	예금					인출		잔액
	재원	예금종류	금액	이율	기간	적요	금액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금지급대장

년월일	적요	채주	지급액	잔액

<삭제>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결재	
					계	과장

<삭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 도로과 정상일 (02-2155-6986)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 로 과	
연 락 처	(02) 2155-6986